

지역문화시설의 지체장애인 동선계획에 관한 연구

- 광주지역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irculation planning of the disabled in Local Cultural arts center

이수용* 박동준** 오세규***
Lee Su-Yong, Park, Dong-Jun, Oh, Se-Gyu

Abstract

The disabled has remarkable difficulties to participate social activities and those, that block them up from access to public facilities and the comfortable habitation so they should get help from others, are mainly made by architectural facts. Buildings without impediment which consider the disabled would be the things responding to the needs of the times. If the disabled would be convenient to use facilities, there should be no difficulties to normal people. A first began to examine into the role of the architecture. And to establish radical standards for the disabled to use cultural and assembly facilities through scrutinizing facilities to get access for the disabled and movement circulations in the cultural facilities should be the conclusion. This study which is a kind of fundamental study to construct cultural facilities without obstacles for the disabled began from consideration for the problem flow line of the disabled in cultural facilities and analyzed flow lines for them to use, access, and evacuate from those which are main facilities in the region. Though, evacuation rules in cultural and assembly facilities are recommendatory in existing laws for convenience of the disabled, the congestion of the crowd coming out after performances impedes safe flows of both the disabled and crowds. Further, in case of evacuation, there would be more serious problems. Therefore, consideration of reinforcement for existing laws for convenience of the disabled is needed.

키워드 : 장애인, 지역문화시설, 동선계획

Keywords : the disabled, local cultural arts center, circulation planning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문화적 형평성은 문화혜택을 사회계층과 지역에 따른 차별 없이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전 국민의 문화 복지를 증진해야 한다는 가치로 문화정책의 핵심이념 중 하나이다. 지역 문화시설은 이러한 사회·문화적 목표에 부합하는 지역민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의 문화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좁게는 지역예술인들의 예술활동의 장으로서, 넓게는 문화적 혜택에 소외된 지역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문화활동의 장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문화는 한 나라, 한 지역, 또는 한 가족을 이루는 공동체가 가진 이념적 경향이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간에 교류되는 에너지원이다.

장애인 역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하게 누려야

하는 권리로서 인정 되어야하며 이것은 사회적 합의와 실천 지향적 담론이 형성되어야 한다.¹⁾ 지금까지는 인간이 환경을 만드는데 표준으로 삼아 왔던 ‘사용자’는 극히 건강하고 평균적이며 때론 이상적인 신체치수와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지닌 사람에 국한되어 왔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왔다. 늙거나 병들어서 혹은 불의의 사고나 선천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게 되어 정상적인 활동에 어려움이 생기게 된 사람들은 소위 ‘불행한 소수’로 생각되어 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용자’의 개념에서 제외되어 왔다.

과거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은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수용시설 중심의 정책으로 그 불편을 해소하는 것과는 무관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복지에 대한 인식이 중요시되고 이에 장애인 기본법과 편의시설관련법이 제정되어 장애인의 공공시설의 이용과 접근에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1997년 제정된 “장애인,

* 정회원, 전남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 정회원, 전남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 정회원, 전남대학교 대학원 건축학부 부교수, 공학박사

1) 박옥순·김영미, 장애우 문화육구와 문화시설 편의시설 실태조사,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2001.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 증진법이라 함)”은 지금까지 제정된 법률과는 달리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등에까지 법적 기준을 강화시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접근권(right to access)²⁾의 확보를 통해 이동약자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공공시설에 대한 소급입법제정까지 채택하고 있다. 편의증진법 제정은 장애인등 이동약자의 이동권³⁾과 접근권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강제하는 대상 시설은 한정되어 있어 모든 일상생활영역을 포괄할 수 없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편의증진법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의무항목과 권장항목으로 지정하여 고시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형식적인 대응으로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물리적·심리적 장애를 겪게 되는 상황이다. 이에 보행에 지장을 받지 않는 일반인 기준의 문화시설계획을 시설이용 약자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이용을 배려한 계획 및 설계기준으로 변경해야함이 시급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문화 활동을 담는 시설들을 장애인 및 임산부, 노약자 등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마련하는데 초석을 마련하기 위함이고,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공연시설에 있어서 장애인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의 조사와 분석은 공연시설에서 장애인의 문화향수와 적극적 이용을 위한 고려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장애인이 신체의 장애를 극복하고 우리사회의 한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모든 시설물이나 서비스 이용에 기회균등이 이루어져야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접근권의 보장이 특히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지체장애인의 문화향유를 위해 접근권

2) 접근권이란 일반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시설(서비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권리’로 정의 될 수 있다. 즉 일상적인 생활 속에 장애인이 모든 시설물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오종희, “지체장애인의 접근권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남대박논, 2003.

3) 공간 이동상에 있어 장애인이 수단(mode) 및 동선을 확보할 수 있고 여기에 제약을 받지 않을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접근권의 정의를 유추하여 장애인등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하고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이동권과 접근권은 별도의 개별화된 권리가기보다는 접근권이 이동권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이며, 이동권은 접근권이 보다 구체화된 권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박준일, “시각장애인 이동권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 석논, 2003, p.11.

과 직접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문화시설의 동선체계를 조사 분석하고자 했다.

이에 지역 문화 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하며, 장애인을 포함한 시민들의 이용이 빈번한 문화기반시설 중 특히 이용프로그램 상 동선체계의 혼잡을 빈번하게 일으킬 수 있는 공연장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에 건립되어진 문예회관 8곳을 연구의 범위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국내의 편의증진법의 구성과 공연장 및 전시장의 편의시설 기준 항목에 대한 고찰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하고 내·외부공간에서 지체장애인⁴⁾의 동선체계를 분석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장애의 개념

장애에 대한 개념은 시대에 따라 다르고, 그 개념이 나타내는 의미 또한 다양하며, 사용하는 용어나 개념에 따라 대상의 존엄이나 권리를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장애의 특성을 규정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의는 세계보건기구(WHO, 1980)의 국제 분류인 ICDH-1(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의 정의이다. 이 정의에는 세 가지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 즉, 질병의 결과로써 손상(impairments)은 의학적 측면에서 볼 때 심리적, 생리적, 해부학적 구조 혹은 기능에 있어서 상실 혹은 비정상적 기능적 장애를 일컫고, 능력 장애(disability)는 손상의 결과로 인해 일반인들에게는 정상이라고 간주되는 방식이나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었거나 결여된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사회적 불리(handicap)는 손상 또는 장애의 결과 특정인에게 나타나는 불이익으로써 성, 연령, 사회, 문화적 요소들을 근거하여 볼 때 당사자에게는 정상적인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약 또는 방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장애의 이와 같은 분류는 장애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어 장애인을 부정적으로 인식시킴으로써 사회적인 차별과 분리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 등이 제기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97년에 ICDH-2(Beta 1)를 발표했다. 이 분류에 따르면 장애는 기본적으로 환경과 개인이라는 상황적 요인을 포함한 장애 개념을 채택하고 있으며, 크게 손상(impairments), 활동(activities), 참여(participation)의 장애로 구분하고 있다.⁵⁾

4) 본 연구에서 지체장애인은 신체적 장애 때문에 보장구 또는 휠체어의 보조를 받아 이동할 수 있는 장애인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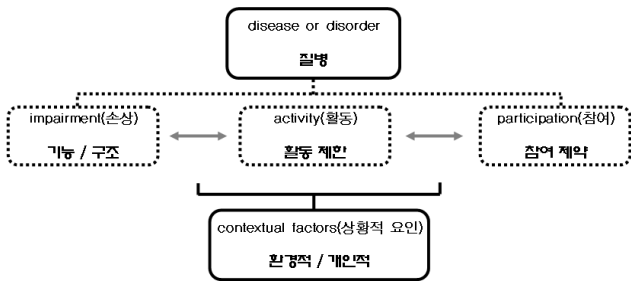


그림 1. ICDH-2의 장애의 정의

이 분류의 주요한 특징은 ICDH-1과 같이 질병이나 손상(1차)을 전제로 기능장애(2차)나 사회적 불리(3차)로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보다 포괄적인 장애를 규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ICDH-1은 장애의 개념을 신체 기능의 상실이라는 의학적 차원과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기능적 능력에 주목하는 경제적 차원이 강조되었던 반면, ICDH-2(Beta 1)에서는 장애인이 사회의 요구에 적응하는 능력만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장애인에게 적합하도록 사회 환경을 바꾸는데 소홀했다는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장애를 장애인과 환경과의 동적인 상호작용의 산물로 생각한다면 장애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환경이 관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장애인 복지패러다임은 사회 환경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2.2. 장애인 접근권

장애인복지서비스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적 참여를 제약하는 요소를 제거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의 물리적 접근권 보장은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 환경의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의 보장이다. 장애인 복지정책의 이념의 실현을 위해서는 접근성(Accessibility)이나 접근권(Right to Access)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이다. 접근성은 『사회복지서비스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용이하여야 한다. 즉, 클라이언트(소비자)가 서비스의 제공 장소에 쉽게 접근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접근권은 이러한 접근성의 제도적인 법률적 권리로 이해된다. 즉,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약자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기회의 균등과 적극적 사회 참여를 목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접근제도는 장애인의 접근권 확보 및 사회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마땅히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며, 이는 현재 한국에서는 1997년 제정·공포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로 구체화된 상태이다. 장애인등의 이동약자에 대한 사회적 노력은 이 법률을 통해 사회통합의 구조로 편입하게 되었고, 그것은 이들의 인권보장과 복지의 증진을 의미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법 제4조 접근권에 대한 규정을 보면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장애를 가지거나 이동과 정보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에게 있어 보편적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장애인 등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접근권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이는 장애인 등의 접근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이해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현행「편의증진법」은 주로 물리적 접근에 대한 편의증진만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인권선언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보장해야 할 포괄적인 접근권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2.3. 장애인의 문화향유

2000년 8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여가활동에 관한 참여 실태와 전반적인 장애인 문화 복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어 조사된 ‘장애우 문화욕구와 문화실태 조사6)’에 따르면 문화 향유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외출에 있어서 월평균 외출횟수가 5회이하인 장애인이 67.7%에 달하고 있다. 즉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외출을 거의하지 못하거나 최소한의 외출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한 지체장애인에 관련한 항목만 살펴보면 지체장애인의 경우 자가용이 26.4%로 비중이 가장 높지만 대중교통수단 이용도 49.6%에 달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에 장애요인이 많은 지체장애인들도 불편함을 무릅쓰고 값싼 대중교통 수단을 선호하고 있었다. 휠

5) 오종희, “지체장애인의 접근권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남대박논, 2003, p.17.

6) 사단법인 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 설문문을 통해 조사하였고 설문응답한 유효응답자는 242명으로 전국지역 우편 및 개별면접조사를 통하여 설문을 받고 시각장애인과 필기가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면접자가 대필하여 조사하였다.

표 1. 조사대상 문화시설의 개요

분류	건립연도	위치	규모	대지면적(m ²)	연면적(m ²)	주요 기능	장애인편의시설 관련법
ND	1980. 05	광주 대의동	지하1층, 지상5층	2,141	3,701	공연장, 전시실, 관련단체사무실	-
GJ	1993. 07	광주 운암동	지하3층, 지상4층	86,903	47,087	대극장, 소극장, 국악당, 조각공원, 원형무대	심신장애자복지법, 건축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30조
SG	2000. 04	광주 금호동	지하1층, 지상3층	18,175	8,176	공연장, 전시실, 도서관, 교육실, 스포츠교실, 문화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GA	2000. 08	광주 금호동	지하2층, 지상3층	2,009	2,000	공연장, 전시실, 기획전시실, 뮤지엄샵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HJ	2002. 05	광주 쌍촌동	지하1층, 지상 4층	203,098	10,581	공연장, 전시장, 관련단체 사무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HS	2002. 07	광주 쌍촌동	지하2층, 지상7층	14,876	17,271	공연장, 체육관, 도서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GS	2002. 10	광주 송정동	지하1층, 지상3층	4,501	4,355	공연장, 전시실, 판소리전수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NG	2003. 11	광주 봉선동	지하1층, 지상7층	3,723	10,321	공연장, 다목적실(전시실) 도서관, 수영장등 체육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체어나 보장구를 사용해 혼자 이동이 가능한 장애인들은 남의 도움 없이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들에 비해 외출 빈도가 다소 높지만 휠체어로 혼자 움직이는 장애인의 경우 월 5회 이하 외출이 61.1%, 보장구를 이용해 혼자 움직이는 장애인의 경우 월 5회 이하 외출이 57.1%로 마찬가지로 외출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보장구 도움 없이 활동하는 데 무리가 없는 장애인들도 5회 이하 외출이 65.4%를 차지해 장애 정도에 관계없이 장애인들은 집밖에 나가는 일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외출 시 교통수단으로는 대중교통수단이 전체의 66%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문화향유의 어려움에 관한 항목에서는 92%의 장애인들이 문화를 즐기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문화를 즐기는 데 있어 어려운 점으로 편의시설 및 교통문제에 앞서 관람료 등 경제 문제(38.8%)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19.8%), 시청각 장애로 관람할 수 없다(13.6%), 자원 활동자가 없다(11.2%), 교통문제(8.7%), 어려움이 없다(7.0%) 순이었다. 즉 장애인들이 문화를 향유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경제력과 이동에 관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조사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장애인들의 질 높은 문화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과제는 경제적인 능력의 해결과 이동권 보장 즉 문화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과, 문화시설로 이동하기 위한 교통문제, 문화시설에 함께 동행 할 자원 활동자의 활성화 등이라고 할 수 있겠다.

2.4. 문화예술회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본 연구의 범위로 설정한 문예회관은 문화예술의 전반적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복합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문

화 인프라의 확충과 문화예술 창작의 지원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한 건물이나 연계건물 내에서 음악 연주회, 연극, 무용, 뮤지컬, 영화상영 등의 공연기능과 전시기능 및 강연, 강습, 도서 등의 자료기능으로 구성된 다양한 문

표 2. 공연장과 전시장의 편의증진법상 지체장애인 관련 세부기준*
(● : 의무, ○ : 권장)

편 의 시 설 항 목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매개 시설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및 접근로	●	●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횡단보도	-	-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지하도 및 육교	-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	●
내부 시설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	●
	장애인들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	●
	장애인들의 출입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	●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	●
	장애인용 승강기	●	●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	●
	휠체어 리프트	●	●
위생 시설	경사로	●	●
	화장실	●	●
	화장실 대변기	●	●
	화장실 소변기	○	○
	화장실 세면대	○	○
	장애인들의 사용이 가능한 욕실	-	-
	장애인들의 사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	-
기 타 시 설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	-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또는 판매기 또는 음료대	○	○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	●
	편의시설의 안내표시 기준	○	○
휠체어등의 비치시설 범위	○	○	

* 공연장·관람장에서는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관람석을 1층에 배치할 경우 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사항임.

화적 기능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물 및 그 시설물을 둘러싸고 있는 일종의 영역으로 1980년대 이후 정책적으로 각 시·군·구 단위로 구축 해왔다. 현재 공연장의 대다수는 다양한 무대예술을 수용하기 위해 전문 공연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이나 기능이 하나로 한정되지 않는 다목적형 공연장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과거의 관(官)에서 건립한 공립문화시설로서 다양한 기능 즉 정부시책, 문화 활동, 공공집회,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행사를 위한 시·군·구민회관과 근간에는 공연뿐만 아니라 학술행사, 문화 활동, 교육, 정보 등의 기능을 갖는 시설로 그 의미를 발전시키며 전시기능과 함께 복합적인 문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에서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⁷⁾ 이처럼 한 공간 내에 각종 문예시설을 건립,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중심적 문화 인프라의 역할을 하는 문예회관은 양적 보급에 급급하여 지역의 문화예술의 수용자인 지역민과 특히 장애인등의 이동약자의 이용에 대한 고려는 매우 열악한 단계라 할 수 있다. 표 2는 공연장과 전시장의 편의증진법에 나타나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세부기준이다.

3. 사례조사 및 분석

조사대상시설의 성격상 공연장을 중심으로 하는 복합적 성격의 문화예술시설이다. 즉, 공연뿐만 아니라 전시장 및 학술행사장으로서의 기능도 구비하는 곳으로서 지역문화창조의 거점공간으로서 인식되는 곳이라 하겠다.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차적인 동선의 흐름보다는 시설의 이용목적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지며, 또한 공연장의 특성상 입·퇴장 시, 비상시에 대규모의 혼잡이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 장에서는 편의시설현황을 먼저 시설이용을 위한 동선의 흐름에 따라 살펴보고, 이용목적 및 상황에 따른 지체 장애인 동선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3.1. 외부접근 시설

3.1.1 주출입구 접근로

진입 도로에서부터 혹은 주차장에서부터 건물의 출입구

6) 편의증진법에 명시된 문화 및 집회시설의 세부기준 중 시각 및 청각장애인에 관련한 안내시설 및 기타시설에 관한 조항은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강병근, 편의증진법 해설, 화영사, 2004 참조 구성.

까지 접근로의 유효폭과 기울기 등 접근 가능성에 대하여 장애인이 대중교통 수단이나 도보로 접근할 때를 포함하여 조사되었다. 1980년에 건립된 ND는 도심지에 위치하여 입지적 조건상 접근이 수월하나 주출입구, 부출입구 모두 계단으로 진입하게 되어있어 휠체어 장애인의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였고, GJ는 대지 전체가 경사지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수단으로는 시설에 접근이 어려웠다. 또한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시설에 접근한다 해도 장애인용 승강기를 통해서 상부 광장으로 진입하는 1방향의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다.

표 3. 주출입구까지 진입 경사로 현황

분류	유효폭 (mm)	기울기	현황	비고
ND	-	-	경사로 없이 계단만 설치, 휠체어 장애인 내부 진입 불가	· 최소유효폭 : 1.2m
GJ	4,600	1/20	공연장 진입 경사로 규격적합	
SG	1,400	1/14 ~ 1/25	주출입구진입 경사로는 규격에 적합하나, 대중교통이용 시 휠체어 장애인 대지 내 접근 불가	· 1/18이 휠체어 장애인의 통행 안전이 보장되는 경사
GA	1,500	1/12 ~ 1/18	장애인 전용주차장에서 주출입구진입 경사로는 규격에 적합하나, 대중교통이용 시 휠체어 장애인 대지 내 접근 불가	
HJ	10,000	일정치 없음	주출입구는 턱이 없으나 접근 경사로는 2개 모두 휠체어 장애인 접근 불가, 접근 불가	· 지형조건상 완화될 수 있는 1/12경사는 매 30m마다 휴식참 필요.
HS	3,300	1/10	주출입구, 부출입구 모두 경사로 설치, 기준 미달	
GS	1,120	1/16	주출입구진입 경사로는 규격에 적합하나, 진입 시 휠체어 장애인 보차분리 턱 때문에 대지 내 접근 불가	cf. 1/12는 결빙 시 보행불가
NG	-	-	경사로 설치 없음, 대중교통 이용 시 대지내부 진입은 주차장으로만 가능	

6개의 다른 시설 역시 주출입구까지 접근에는 보차분리되지 않거나, 보차분리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턱 낮추기를 하지 않아 접근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경사로 기울기 역시 기준에 미달되는 곳이 8개의 조사 대상 시설 중 6곳에 해당했다. NG의 경우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휠체어 장애인일지라도 주차장을 통해서만 대지내로 접근이 가능했다. 이처럼 보행 안전을 위한 통행로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휠체어 이용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입구로부터 건물 출입구 까지 이동하는 데 차량 등의 간섭으로 인해 위험을 느낄 수 있다.

3.1.2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ND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지 내에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다. GJ는 입지와 규모의 특성상 대지 전

체에 주차장이 산재하지만 이중 장애인이 공연장과 전시장 등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하주차장만을 이용해야 한다. 이처럼 대지조건으로 인해 지하주차장에서 진입해야 하는 경우는 조사대상시설중 3개소이며, 이중 1개소는 지하주차장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계획되어있지만 규격 미달(4,000x3,000, 4,000x2,250)이어서 지체장애인들이 주차 후 차량의 문을 최대한 열고 휠체어로 옮겨 앉은 후 이동 할 수 있는 유효 폭이 보장되지 않았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시행하고 있지만 안내시설이나 표지판의 미설치 혹은 차량 등에 가려져 있어 식별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해당 시설에 처음 방문한 장애인에게는 혼란을 줄 수 있다.

표 4. 시설에의 접근방식에 따른 분류

< ○ : 기준에적합, △ : 1개이상의 규격미달, × : 규격미달로 진입불가능 및 위험(단차, 경사로, 바닥면의 재질, 배수구, 뒤편). >

분류		ND	GJ	SG	GA	HJ	HS	GS	NG
대중교통, 도보	보행가능	△	△	△	△	△	○	△	△
	보행불가	×	×	△	×	×	○	×	×
승용차	보행가능	△	○	○	△	○	○	△	○
	보행불가	×	○	○	△	○	○	△	○

표 4는 보행이 가능한 지체장애인과 보행이 불가능한 휠체어장애인의 경우로 분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와 승용차를 이용하여 대지 내 주차장까지 진입한 이후에 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 이동할 때의 경우 즉 시설로의 접근 방식에 따른 분류표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대지의 입구에 도착한다 하더라도 보행로 내의 단차와 규격미달의 경사로 혹은, 일정하지 않은 바닥의 재질 등의 문제로 휠체어 장애인은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지체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문화시설로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건립되어진지 20년이 넘는 ND의 경우뿐만 아니라 2000년 이후에 건립된 시설들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다.

3.1.3.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조사대상 시설 모두 주출입구에 높이차이가 있지만 2개소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았고, 높이 차이를 제거하기 위한 경사로는 6개소에 설치되어 있다. 그 중 3개소는 기울기가 1/7, 1/10으로 조사되어 1/12이하의 기울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였고, 나머지 3개소 역시 주출입구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인접 도로에서 대지내로 접근이 경사와 단차 때문에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다.

또한 경사로의 길이가 1,800mm, 높이가 150mm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 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300mm이상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하지만 경사로 설치를 한 6개소 중 기준대로 설치되어 있는 곳은 1개소에 불과했고 기준미달이 2개소, 미설치가 3개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3.2. 시설 이용목적에 따른 동선 분석

조사대상시설의 성격상 공연뿐만 아니라 전시장 및 학술행사장으로서의 기능도 구비하는 곳으로서 복합적 기능을 갖는 시설이기 때문에 실제 관람자는 다양한 목적으로 방문하게 된다. 주요한 이용목적에 해당하는 기능을 살펴보면 공연관람, 전시관람, 문화교육 및 자료와 동호회 활동 등이 이루어진다.

지체장애인이 문화의 향수를 위해 시설에 방문하여 이용하게 되는 주요 기능들을 동선 흐름에 따라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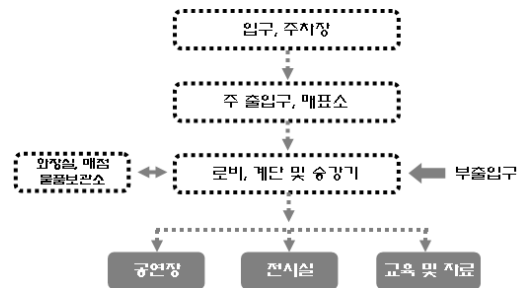


그림 2. 시설 이용절차와 동선

표 5의 조사대상시설의 시설이용에 따른 동선계획을 살펴보면 시설의 외부공간을 지나 내부공간으로 일단 들어서면 외부공간에 비해 물리적 장애는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시설이용목적이나 이용의 순서에 따라서 내부공간에서도 동선의 혼재가 보이는데, 경미한 보행 장애를 갖는 사람에 비해 휠체어 장애자는 시설이용에 심각한 불편을 느낄 수 있다.

즉 공연관람 이전에 전시나 자료의 이용을 위해 시설 내에서 이동하였을 경우 다시 공연관람을 위해 기타시설에서 공연장으로 직접동선이 있음에도 다시 1층 로비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3.2.1 공연관람을 위한 동선

일반적으로 공연장에서의 동선계획은 공연장 내외부에 있어서의 관객, 출연자, 문예회관 직원의 동선은 혼잡하지 않고 명쾌해야한다. 또한 관객이 매표소를 거쳐 로비를 지나 객석에 이르는 동안의 모든 시설은 유기적으로 연결

표 5. 시설 이용에 따른 지체장애자 동선계획 분석

분류	공연관람 진입동선	피난 및 퇴장동선	기타 시설이용 동선과의 연계	분석
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출입구와 부출입구 모두 지체 장애인 접근에 불리. 경사로 설치 없음.(도면내 화살표는 출입구 표시) 층별 이동 불리(휠체어장애인 진입불가)
GJ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모와 배치의 특성상 광장에 위치한 장애인승강기(점표시)로 이동 후 경사로를 이용 공연장에 진입. 퇴장도 입장과 동일한 조건 입지특성상 휠체어장애인 대중교통 이용하여 진입 불리
SG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출입구 진입 시에는 휠체어 장애인 진입 불리(바닥재 요철) 실내 진입 후에는 내부 경사로와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의 설치로 층별 각 기능의 복합적 이용가능
G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중교통 이용 시 진입 불리(규격미달의 접근 경사로) 자가용 이용 시 시설이용 용이.
HJ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중교통 이용 시 휠체어 장애인은 지하주차장 내의 장애인용 승강기를 이용해야만 진입 가능
H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부출입구 모두 경사로 채택하여 진입 및 퇴장 시 유리 수직, 수평기능간 연계이동 불리.
G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직기능 간 연계 이동 불가. 두 가지 이상의 시설이용목적이 있는 경우 시설내의를 왕복해야 함.
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중교통 이용 진입 불리 시설이용 시 주출입구 광장 대신 주차장을 이용해야만 휠체어 장애인 진입 가능.

되어서 관객이 필요한 동작 및 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쾌적하게 배치되어야 한다.⁸⁾

공연시작시간과 끝나는 시간은 통상적으로 많은 혼잡을

빚게 되는데, 특히 공연이 끝나는 시간에는 짧은 시간동안 많은 사람들이 퇴장하기 때문에 지체 장애인들은 더욱 이동에 불편과 불안을 느낄 수 있다. 이는 공연입장 관리를 위해 단아두었던 부 출입구등을 개방하더라도 부 출입

8) 문화관광부, 문예회관 표준모델 개발연구, 2001, p.121.

구에 경사로 등 시설이 미비하여 지체장애인들은 입장 시 선택했던 길을 되돌아와야 하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 시설 역시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HJ의 경우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방문한 장애인의 경우라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지하주차장을 통해서만 퇴장이 가능하며, GS의 경우에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경우 공연관람 후 외부도로를 통해서 이동을 해야 하는 불리한 동선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사 대상 시설 중 1개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출입구에는 단차가 있어 퇴장 시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즉 지체장애인의 경우 필요에 의해 동선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비장애인보다 적기 때문에 화재 등 비상사태 시 크게 불리함을 알 수 있다.

3.2.2 전시관람 및 교육공간이용을 위한 동선

조사대상시설중 ND, GJ를 제외하고는 모두 장애인용 승강기를 포함 하고 있어서 시설 내 진입 후 층간이동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하지만 승강기 및 계단의 위치의 부적절함과 장애인 편의시설의 미비는 오히려 이동에 혼란을 주고 있다.

즉 시설이용목적의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전시, 교육, 자료 시설을 이용한 뒤 공연장을 이용해야 할 경우 공연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의 선택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

ND의 경우는 전시를 관람하고 상부로 이동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나 승강기가 없기 때문에 공연의 관람이 불가하다. 또한 GJ의 경우 전시를 관람하고 상부차양이나 따로 계획된 보행로가 없기 때문에 외부의 광장을 통해서 공연장까지 이동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공연이나 전시를 본 후에 야외공연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시 지하주차장으로 승강기를 이용해 내려간 후 보차분리가 없는 보행로를 통해서 야외공연장으로 나와야 한다.

HS의 경우 전시시설과 도서관을 이용한 지체장애인은 외부의 광장을 통해서 공연장의 2층으로 갈수도 있지만, 단 차이와 계단 때문에 짧은 동선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장애인용 승강기를 이용해 1층으로 내려가서 다시 공연장으로 가야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

3.2.3 피난을 고려한 동선

공연장은 구조적으로 재난 시 피난에 어려움이 많은 공간이다. 실내는 어둡고, 계단식 구조로 되어 있으며 많은 사람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가장 기본적인 피난동선은 밖으로 나가는

데 있으므로 출입문의 배치계획이 중요하다. 객석 전면부 양쪽 문의 너비를 충분히 하여 관객 전체가 빠져나가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입문이 많을수록 좌석과 문 사이의 거리가 단축되므로 적정한 문의 수와 위치를 정해야 한다.⁹⁾ 특히 피난상황에서는 휠체어 장애인은 입장할 때의 동선을 되짚어 가지 못한다면 계단 등 물리적 장애물에 맞닥뜨리게 되고 혼란을 빚어 더 큰 재해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즉 비장애인은 피난이나 퇴장의 동선의 선택에 있어서 부출입구등 다수의 가능성을 갖게 되지만 휠체어 장애인은 다시 입장했던 주출입구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된다.

4. 결 론

장애인들이 문화시설에서 동등한 문화향수의 기회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항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품고, 기존에 건립된 공공문화시설의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찰하고자 한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실태와 장애인 동선을 분석하여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편의증진법에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최소한의 수준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시설에 적용함에 있어 규정에 맞추는 것만 중요시하고 그것을 왜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조사 대상시설 중 일부에서는 장애인 출입을 위한 경사로가 있는 출입구를 폐쇄한 채로 다른 출입구만 이용 중인 곳도 있었다. 관리자의 인식의 부족은 단지 ‘규정을 위한 설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설치된 편의시설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설치 후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증진시켜주기 보다는 오히려 불편을 느끼게 한다. 또한 편의시설은 어떤 특정장애만을 위한 시설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정장애인들을 위해 설치된 편의시설이 다른 장애 혹은 일반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도록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2) 지체장애인이 문화시설을 이용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도로에서 건물로 진입할 때까지의 과정이다. 일단 내부로 진입 후에는 장애인 승강기 등 편의시설을 이용해 동선이 길어진다 해도 이동은 가능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은 도로에서 주출입구까지의 편의시설이 미비 되어있는

9) 문화관광부, 문예회관 표준모델 개발연구, 2001, p.138.

경우로 경사로의 기울기, 바닥 마감 방식, 장애인 동선에 대한 안내표식의 부재가 주요한 원인이었다.

3) 승용차를 이용하여 접근하는 경우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경우 더 많은 물리적 장애가 많았는데 이것은 시설의 입지의 영향이 컸다. 특히 경사대지의 시설이거나 대지 전후로 큰 단차가 있는 경우가 그러하다. 입지의 문제는 적정규모의 대지 확보 등 지역적 문제가 크지만 장애인의 접근성을 건립초기 단계부터 대지의 상황에 맞게 적정한 장애인 이용 방안과 접근, 동선계획에 대한 기초적 연구가 수립이 되어야하겠다.

4) 지체장애인은 공연, 전시, 교육 등 문화적 활동을 하고난 후 퇴장하거나 혹은 피난 시 입장할 때 유도되었던 동선을 그대로 되찾아 가야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것은 주출입구를 제외한 다른 모든 부출입구에는 단차가 있으며 이를 보완할 경사로 등이 부재하고, 또한 장애인 동선에 정보를 줄 수 있는 안내표식의 부족함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체장애인의 피난 상황에 관한 내용은 현행 편의증진법상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즉 모든 출입문에는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출입문의 계단 대신 설계단계에서부터 경사로로 계획하여 시설 내 진입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퇴장이나 비상시를 위해 지체장애인 이동 동선에 많은 선택의 폭을 줘야한다.

본 연구는 장애물 없는 문화시설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지역의 문화 활동 중심이 되는 지역문화회관의 지체장애인의 접근성의 관점에서 기존에 건립되어진 문화회관을 사례로 지체장애인의 시설로의 접근과 이용 그리고 피난 상황에 대한 동선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특히 공연장의 경우처럼 공연시작과 끝나는 시간에 혼잡을 일으켜 일반인과 장애인 모두 안전한 이동을 저해 받을 수 있고 피난상황에서는 더욱 문제가 있을 것이므로 장애인의 피난규정에 대한 편의증진법상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일상생활을 위해서 이용해야하는 모든 시설물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 취지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문화 활동을 담는 시설들을 장애인 및 임산부, 노약자등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마련하는데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 본 연구는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에 있어서 장애인

의 문화향수와 적극적 이용을 위한 고려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참고문헌

1. 강병근, 편의 증진법 해설, 화영사, 2004.
2. 강병근,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1998.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 조사보고, 2001.
4. 오종희, “지체장애인의 접근권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 논문, 2003.
5. 문화관광부, 문예회관 표준모델 개발연구, 2001.
6. 김동준, “공공건물의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계 개선 대안 연구”, 건국대 석사학위 논문, 1998.
7. 김성희, “장애인 편의시설과 사회참여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1998.
8. 신병철,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 논문, 1997.
9. 하상범, “장애인의 접근권에 관한 연구”, 숭실대 석사학위 논문, 1998.